

특수 교육/서비스에 대한 권리

본 글의 목적은 특수 교육을 포함한 무료, 적절한 공립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학생의 권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 및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상기와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IDEA와 Section 504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Prince William County에 거주하며 특수 교육, 서비스 및/또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 변경 등을 필요로할 수 있는 영아에서 만 21세까지의 장애아동을 발견, 선별, 및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법규에 따라,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교직원에 의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육구 내 거주 학령 아동에 대한 평가 요청.
- 장애 학생에게 최대한 정규교육에 포함된 방식으로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
- 근처 사립학교, 소아과, 및 보건소에 교육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및 장소를 알림.
- 장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매해 학생의 평가 및 배정 또는 배정 변경이 있기 전, 학생의 권리에 대해 통보.
- 장애 학생의 선별, 평가 및 반배정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절차상의 보호장치 개발 및 실행.
- 장애로 비롯한 차별 또는 괴롭힘(harrassment)에 대한 학생의 불만 제기를 보고, 조사 및 해결할 절차를 제공. 본 절차는 2016년 4월 교육구가 수정하였으며 [규정 제 738-1호](#)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학생 불만 제기 절차”에 명시됨.
- 학부모/후견인에게 교육구의 절차상의 보호장치에 대한 서면 통보 제공

귀하의 자녀에게 발달 또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또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수 교육 부서장(Director of Special Education)에게 전화(703.791.7287)주십시오.